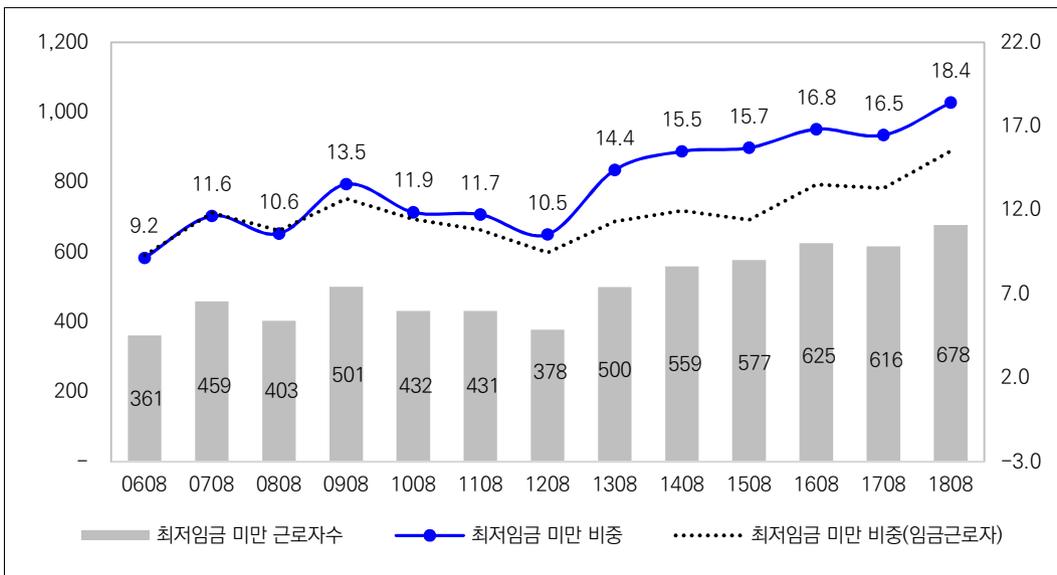


## 청년층(15~29세)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

- 2018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7,530원(시급)이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11만 명으로 나타남.
  - 지난 5년간(2013~2017년) 법정 최저임금은 연평균 7.4% 증가하였고,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2017년 13.3%로 2013년에 비해 2.0%p 증가함.
  -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는 16.4%이었고,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15.5%로 2017년 대비 2.2%p 증가함.
- 우리나라 청년층(15~29세)의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68만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18.4%에 이룸.
  - 청년층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50만 명을 넘어섰고,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2012년에는 38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으나 2016년 60만 명에 도달한 이후 2018년 68만 명에 달함.
  - 특히 15~19세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0명 중 6명(60.9%)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, 이들 중 학업과 병행하고 있는 재학생의 경우 10명 중 7명(71.1%)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- 청년층(15~29세)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주로 음식숙박업(37.9%)과 도소매업(23.0%)에 종사하고 있으며, 대부분 서빙 등 서비스직·판매직 종사자(80.7%)임.
  - 2018년 8월 도소매·음식숙박업의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9만 명 감소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만 명 증가함.
  - 한편 청년층과 함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20.4%),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(15.3%), 공공부문(20.4%)과 단순노무직(70.3%)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아 청년층과 다른 특징을 보임.

[그림 1] 청년층(15~29세)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 추이

(단위: 천 명, %)



주: 임금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기준임.

시간당 평균 임금=3개월 평균임금총액/(평소 주당근로시간×30.4/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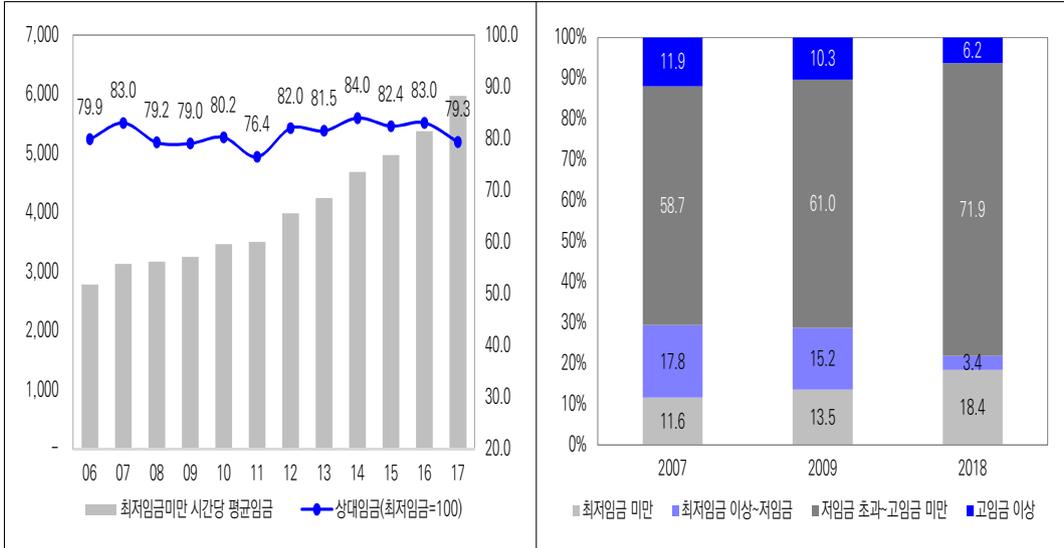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(8월 부가조사)」, 각 연도.

-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.972원으로 최저임금의 79.3%에 불과함.
  - 2018년 8월 임금근로자와 청년층 평균임금상승률(시간당 임금 기준)은 각각 6.2%, 7.1% 인 가운데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1.2%이지만 최저임금 대비 상대임금수준은 2017년 83.0%에 비해 악화됨.
  -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6.5%,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17.7%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, 다른 사회보험가입률과 복지수준도 20% 내외 수준임.
-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임금분포를 보면,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최저임금 미만을 포함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30%에 육박했으나, 2018년에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증가했으나 최저임금 이상~저임금근로자 비중은 감소하면서 21.8%로 나타남.
  - 청년층의 최저임금 수혜자는 2015년 54만 명(20만 명 증가)으로 증가한 후 2018년까지 52~53만 명대에서 정체되어 있음.<sup>1)</sup>
  - 이들은 주로 제조업, 도소매업, 협회·단체·기타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, 음식숙박업에서는 오히려 감소(14천 명)한 것으로 나타남.

1) 최저임금수혜자는 '최저임금의 90%~최저임금의 110%'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인 근로자를 의미함.

[그림 2] 청년층(15~29세)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, 상대임금수준, 임금분포

(단위 : 천 원, %, 최저임금=100)



주 : 1) 임금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기준임. 시간당 평균 임금=3개월 평균임금총액/(평소 주당근로시간 x 30.4/7)

2) 임금분포는 최저임금, 저임금(=중위임금의 2/3 미만), 고임금(=중위임금의 3/2 이상)으로 구분함.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(8월 부가조사)」, 각 연도.

- 청년층(15~29세)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0명 중 3명은 ‘학업·학원수강·직업훈련·취업준비를 병행하기 위하여’ 선택한 일자리이며, 이외에도 ‘근로조건(근로시간, 임금 등) 만족하여’, ‘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’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.
  - 하지만 이들 중에 ‘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’ 일자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함.
-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·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임.
  -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. **KLI**

(김복순, 동향분석실 전문위원)